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3. 21 선고 2023가단308625 판결 [사용료 및 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2. 29.

판 결 선 고 2024. 3. 21.

주 문

1. 피고는 85,720,804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2,361,101원과 그 중 51,595,454원에 대하여 2023. 10. 14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다툼 없는 사실, 원고가 제출한 서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2021. 11. 2. 소외 D(이하 ‘소외 회사’라 한다)와 사이에 (차량번호 1 생략) 지프 그랜드 체로키 3.6 자동차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(약정 지연배상금율 연 19%)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원고의 위 차량 취득가액 65,939,080원의 130%인 85,720,804원의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, 원고는 2023. 9. 14. 소외 회사의 리스로 체납에 따라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, 2023. 10. 13. 기준 소외 회사가 지급할 금원은 중도상환금 원금 51,595,454원, 지연손해금 등 765,647원, 합계 52,361,10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5,720,804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미지급 금원 52,361,101원과 그 중 원금인 51,595,454원에 대하여 2023. 10. 14.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9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피고는 이에 대하여 그 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그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피고의 위 채무부담 행위가 소외 회사 대표이사 사임을 해제조건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.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 조중래